

시 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2048호

2022년 7월 29일 금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고 시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44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2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785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공고·열람 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815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1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817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 21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80호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2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81호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1

회 람									
--------	--	--	--	--	--	--	--	--	--



고 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44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425(2021.11.29.)호’로 변경·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9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인천명선초등학교 급식통로 증축을 위해 건폐율 계획 변경(25%→27%)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2. 개발사업 시행기간 (변경없음)
3. 소요토지의 확보와 이용계획 (변경없음)

가. 소요토지의 확보계획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4. 「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단계별시행 계획 (변경없음)

5. 「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변경)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행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 교육시설용지 (변경)

도면표시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6-4 D14-2 D17-2 F19-2 F17-2	용도	허용 용도	○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 지정용도 - 노유자시설(유치원)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기정	○ 25% 이하(단, D17-2 30% 이하)
		변경	○ 25% 이하(단, D6-4 27% 이하, D17-2 3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25m 이하	
	배 치	○ 교사동 : 각 도로로부터 직각 또는 평행 배치 ○ 교사동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건축물 배치 ○ 도로변(폭 25m 이상)에 교사동 배치를 지양할것	
	행 태	○ 시설별 성격 부각, 옥탑시설물과 지붕형태를 다양하게 표현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6. 「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산업·유통시설용지 일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분양용지로 공급하는 방안 (해당없음)

7. 「법」 제9조의2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변경없음)

8. 「법」 제9조의8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해당없음)
9.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변경없음)
10.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변경없음)
11. 위치도 (변경없음)
1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변경없음)
13. 계획평면도와 개략설계도서 (변경없음)
14. 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 (변경없음)
15. 외국인투자 유치계획 (변경없음)
16.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변경없음)
17.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처분 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에 관한 계획서 (변경없음)
18.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변경없음)
19.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해당없음)
20.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 (변경없음)
21.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해당없음)
22. 존치하려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해당없음)
23.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변경없음)
24.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변경없음)
2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당없음)

26. 골프장주택단지 조성계획 (변경없음)

27.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관계 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42)에 갖추어 놓음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785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실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과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7. 29.

인 천 광 역 시 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체육시설	골프장	강화군 선두리 산422-1번지 일원	245,000	감)4,713.3	240,286.7	인고 제2009-137호 (2009.4.27.)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선두리 골프장	• 면적 : 245,000㎡→240,286.7㎡ (감4,713.3㎡)	• 지적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감소

□ 실시계획인가(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산422-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 명칭: 강화 선두리골프장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토지이용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증감	
총 계		245,000	240,286.7	감)4,713.3	100.00
체육시설용지		55,820	50,729	증)5,091	21.11
건축시설용지		5,940	2,008	감)3,932	0.84
기반시설용지		21,192	20,121	감)1,071	8.37
녹지 용지	소 계	162,048	167,428.7	증)5,380.7	69.68
	완충녹지	72,481	77,861.7	증)5,380.7	32.40
	복원녹지	16,872	16,872	-	7.02
	원형 녹지	72,695	72,695	-	30.25

※ (변경사유) 창고 등 건축계획 축소, 마운딩 설치에 따른 녹지 증가 등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 성명: (기정)㈜강호개발 대표이사 오진국
(변경)㈜강호개발 대표이사 김영만
-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남산리 14-1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 (기정) 2013. 9. 13. ~ 2022. 08. 31.

○ (변경) 2013. 9. 13. ~ 2022. 11.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연번	소재지	기 정				변 경				소 유 자		소 유 권 외 의 권 리			비고							
		지 번	지 목	면적 (㎡)		지 번	지 목	면적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종류 및 내용								
				지 적	편 입			지 적	편 입													
1	길상면 선두리	산536	구	1,091	393	1575-4	구	381.0	381.0	국(국토교통부)												
2	길상면 선두리	1053-25	답	608	608	1575	체	163,479.8	163,479.8	주식회사 강호개발 (수탁자: 한국자산 신탁(주))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14-1											
3	길상면 선두리	1053-23	대	377	377																	
4	길상면 선두리	1161	잡	397	397																	
5	길상면 선두리	산422-36	임	49,613	44,116																	
6	길상면 선두리	산422-35	임	33,198	31,159	1575-1	임	52,282.4	52,282.4													
7	길상면 선두리	산422-33	임	89,039	77,068																	
8	길상면 선두리	산422-32	임	64,581	33,067																	
9	길상면 선두리	산422-1	임	33,183	33,183	1575-5	체	4,405.8	4,405.8							주식회사 강호개발 (수탁자: 한국자산 신탁(주))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14-1					
10	길상면 선두리	산422-25	임	23,905	23,905																	1575-6
11	길상면 선두리	1053-126	임	535	535	1575-3	체	535	535													
12	길상면 선두리	1053-124	임	984	192	1575-2	도	192	192	강화군												
소 계				297,511	245,000			240,286.7	240,286.7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8.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02, 남동구 정각로 29)
- 강화군청(도시개발과, 032-930-3807,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10. 관계서류: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1815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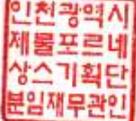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및 폐기한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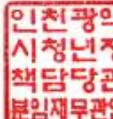
2022. 7.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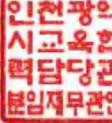
인 천 광 역 시 장

1. 등록 및 폐기사유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부서 신설, 폐지, 명칭 변경
2. 최초사용연월일 : 2022. 7. 29.
3. 폐기연월일 : 2022. 7. 29.
4. 등록(폐기) 공인명 및 인영 : 붙임 참고

등록 공인명 및 인영

인천광역시 시청혁신담당 관 분임물품출납원인	인천광역시 시청혁신담당 관 분임재무관인	인천광역시 시청혁신담당 관 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기 획단 분임물품출납원인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기 획단 분임재무관인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기 획단 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 스기획단 분임물품출납원 인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 스기획단 분임재무관인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 스기획단 일상경비출납원 인	인천광역시 홍보담당관 분 임물품출납원인	인천광역시 홍보담당관 분 임재무관인	인천광역시 홍보담당관 일 상경비출납원인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인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담당관 분임재무관인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단 분임물품출납원인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단 분임재무관인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단 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광역시 시민소통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인	인천광역시 시민소통담당관 분임재무관인
			
인천광역시 시민소통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인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분임재무관인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광역시 교육협력담당 관 분임물품출납원인	인천광역시 교육협력담당 관 분임재무관인	인천광역시 교육협력담당 관 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광역시 국제평화협력 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인
			
인천광역시 국제평화협력 담당관 분임재무관인	인천광역시 국제평화협력 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광역시 공공시설혁신 담당관 분임재무관인	인천광역시 공공시설혁신 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 분 임물품출납원인	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 분 임재무관인	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 일 상경비출납원인	인천광역시 전략산업과 분 임물품출납원인
			

인천광역시 전략산업과 분 임재무관인	인천광역시 전략산업과 일 상경비출납원인	인천광역시 노동정책과 분 임물품출납원인	인천광역시 노동정책과 분 임재무관인
			
인천광역시 노동정책과 일 상경비출납원인	인천광역시 택시정책과 분 임물품출납원인	인천광역시 택시정책과 분 임재무관인	인천광역시 택시정책과 일 상경비출납원인
			
인천광역시 건축과 분임물 품출납원인	인천광역시 건축과 분임재 무관인	인천광역시 건축과 일상경 비출납원인	인천광역시 물류정책과 분 임물품출납원인
			

인천광역시 물류정책과 분 임재무관인	인천광역시 물류정책과 일 상경비출납원인	인천광역시 민간협력과 분 임물품출납원인	인천광역시 민간협력과 분 임재무관인
			
인천광역시 민간협력과 일 상경비출납원인	인천광역시 청사시설과 분 임물품출납원인	인천광역시 청사시설과 분 임재무관인	인천광역시 청사시설과 일 상경비출납원인
			

폐기 공인명 및 인영

인천광역시 혁신과 분임물품출납원인	인천광역시 혁신과 분임재무관인	인천광역시 혁신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광역시 재생콘텐츠과 분임물품출납원인
			
인천광역시 재생콘텐츠과 분임재무관인	인천광역시 재생콘텐츠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분임물품출납원인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분임재무관인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광역시 소통기획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인	인천광역시 소통기획담당관 분임재무관인	인천광역시 소통기획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건축 과 분임물품출납원인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건축 과 분임재무관인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건축 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광역시 시민정책담당 관 분임물품출납원인
			
인천광역시 시민정책담당 관 분임재무관인	인천광역시 시민정책담당 관 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광역시 청년정책과 분 임물품출납원인	인천광역시 청년정책과 분 임재무관인
			
인천광역시 청년정책과 일 상경비출납원인	인천광역시 평생교육담당 관 분임물품출납원인	인천광역시 평생교육담당 관 분임재무관인	인천광역시 평생교육담당 관 일상경비출납원인
			

<p>인천광역시 국제협력담당 관 분임물품출납원인</p>	<p>인천광역시 국제협력담당 관 분임재무관인</p>	<p>인천광역시 국제협력담당 관 일상경비출납원인</p>	<p>인천광역시 재산관리담당 관 분임재무관인</p>
			
<p>인천광역시 재산관리담당 관 일상경비출납원인</p>	<p>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과 분임물품출납원인</p>	<p>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과 분임재무관인</p>	<p>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과 일상경비출납원인</p>
			
<p>인천광역시 미래산업과 분 임물품출납원인</p>	<p>인천광역시 미래산업과 분 임재무관인</p>	<p>인천광역시 미래산업과 일 상경비출납원인</p>	<p>인천광역시 노동정책담당 관 분임물품출납원인</p>
			

인천광역시 노동정책담당 관 분임재무관인	인천광역시 노동정책담당 관 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광역시 택시물류과 분 임물품출납원인	인천광역시 택시물류과 분 임재무관인
			
인천광역시 택시물류과 일 상경비출납원인	인천광역시 협치인권담당 관 분임물품출납원인	인천광역시 협치인권담당 관 분임재무관인	인천광역시 협치인권담당 관 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광역시 청사건립추진 단 분임물품출납원인	인천광역시 청사건립추진 단 분임재무관인	인천광역시 청사건립추진 단 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인
			

<p>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담당관 분임재무관인</p>	<p>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p>	<p>인천광역시 도서관정책과 분임물품출납원인</p>	<p>인천광역시 도서관정책과 분임재무관인</p>
			
<p>인천광역시 도서관정책과 일상경비출납원인</p>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817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 호 (대표자)	등 록 말소일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폐업사유	비고
(주)서우디앤씨 파트너스 (김지선)	2022. 7. 27.	인천22000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56, 2205호 (송도동, 테크노파크 비티센터)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난	

2022년 7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장

입법예고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 2022-80호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29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물환경보전법 개정(2017.1.17., 시행 2018.1.18.)에 따른 법률제명 변경
- 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신설(2019.10.15.)에 따른 부담금
이의신청 서식 마련

다. 공증인법 개정(2017.12.12., 시행 2018.6.20.)에 따른 민간위탁 협약 공증 의무 규정 삭제

2. 주요내용

가. 법률제명 변경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나. 부담금 이의신청 서식 신설

나.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삭제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참조 : 수질환경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윤정(전화번호: 032-440-3607, 팩스번호: 032-440-8686, 전자메일: yun917@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별첨

자치법규안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4조1항 중 “납기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를 “납기일까지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15조 중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을 제외한 운영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협약내용을 공증하여야 한다”를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호서식]

이의신청서

신 고 인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당초 부과 명세	납부통지서 수령일		납부통지서 일련번호	
	부과일시		부과금액	
	납부기한			
환급금 수령 계좌번호				
이의 신청사유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과 질
 3. 수질오염물질 처리비용
 4. 자본금, 종업원 수, 연간 제품생산량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한 사업 규모
- 위 사항을 증명하는 자료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배수설비 설치 및 검사 등)</p> <p>①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제3조에 따라 승인된 내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설비를 차집관거에 접속 시킬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p> <p>② ~ ⑤ (생략)</p>	<p>제4조(배수설비 설치 및 검사 등)</p> <p>① ----- 「물환경보전법」----- ----- ----- ----- -----</p> <p>② ~ ⑤ (현행과 동일)</p>
<p>제14조(이의신청)</p> <p>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u>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u>, 부과금액이 잘못 부과되었을 때에는 당월 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분할 납부하도록 고지된 경우에는 총금액 확정 통보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14조(이의신청)</p> <p>① ----- ----- ----- <u>납기일까지 별지 제 8호 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u>, ----- ----- ----- -----</p> <p>② ~ ③ (현행과 동일)</p>
<p>제15조(부담금 독촉장 발급)</p> <p>조례 제21조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납기경과 후 10일 이내에 <u>별지 제8호 서식</u>에 따른 독</p>	<p>제15조(부담금 독촉장 발급)</p> <p>----- ----- ----- ----- <u>별지 제9호 서식</u>-----</p>

관련규정

□ 「물환경보전법」 개정문(개정 2017. 1. 17, 시행 2018. 1. 18.)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9.10.15.)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4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 절차 등)

①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이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라 한다) 납부 통지 내용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제 제30호의4서식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이의신청서에 제64조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 (2020. 8. 행정안전부)

2. 정비방향

(규정삭제)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 및 공증비용 전가 문제가 있으므로
공증의무 규정 및 수탁자 비용부담 규정 삭제

□ 「공증인법」 (시행 2018. 6. 20.)

제2조 (공증인의 책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3.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81호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29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6조의2 (준속기한)에 따라 특별회계 준속기한이 만료예정인바, 준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특별회계 운용 도모하고자 함

나.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6조의2(존속기한)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 예정이므로 지속적·안정적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 연장함

나.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

- 검단일반산업단지 → 뷰티폴파크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수질환경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윤정(전화번호: 032-440-3607, 팩스번호: 032-440-8686, 전자메일: yun917@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별첨

자치법규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검단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뷰티폴파크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2(존속기한) 제16조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설치 및 처리구역)</p> <p>①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검단일반산업단지</u> 공공폐수처리시설 2. <u>강화일반산업단지</u> 공공폐수처리시설 3. <u>I-Food Park 일반산업단지</u> 공공폐수처리시설 <p>② (생략)</p> <p>제16조의2(존속기한)</p> <p>제16조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u>2022년 12월 31일</u>까지로 한다.</p>	<p>제3조(설치 및 처리구역)</p> <p>①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뷰티폴파크</u> ----- --- 2. ----- --- 3. ----- ----- <p>② (생략)</p> <p>제16조의2(존속기한)</p> <p>----- ----- <u>2027년 12월 31일</u> -----</p>

관련규정

□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서구고시 제2022-57호)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 가. 명칭 : (기정)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변경) 뷰티폴파크

□ 「지방재정법」 (개정 2021. 1. 12., 시행 2022. 1. 13.)

제9조(회계의 구분)

-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개정 2021.11.08., 시행 2021. 11. 8.)

제5조(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평가 등) ①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각 특별회계와 기금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존치 필요성 등을 평가한 시안을 작성한 후 제10조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각 특별회계 해당 부서의 장은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평가된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해서는 폐지하거나 관련 회계와 통합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재정을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시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변경 등 시의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 2. 특별회계와 기금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3.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평가 결과와 조치사항 확정
4. 그 밖에 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개정 2022. 4. 21., 시행 2022. 4. 21.)

제16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부담금, 일반회계로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17조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④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6조의2(존속기한) 제16조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